[별지 제10호 서식]

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결과 통보서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)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갱신 심사결과를 통보하오며,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○ 대상기관명(기관기호) : 한마음복지센터 (3-50110-00140)

○ 갱신 심사결과 :

☑ 적격 (재지정 승인)

☐ 부적격 (사유:)

○ 재지정 유효기간 : 2025. 12. 12 ~ 2031. 12. 11

붙 임 :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1부. 끝.

2025년 12월 08일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

제주시장인 인원사용전용

※ 갱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행정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 검토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.